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04
----------	-------

발의연월일 : 2023. 8. 8.

발의자 : 이재명 · 김성주 · 김민석

이해식 · 진성준 · 박범계

우원식 · 문진석 · 이수진(부)

김승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
· 공유지로서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
래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관행은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국민들 위주로 자연 환경을
즐기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어 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장애가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과의 지속적 대
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

한 성과를 거두었고, 하천과 계곡의 이용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 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여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나.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 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함(안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 신설).
- 다. 하천관리상황의 점검을 위해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4조제2항 신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책무”를 “책무와 국민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민은 법률에서 제한하거나 긴급한 안전 확보 목적 등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제4항 중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을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시설과 홍수방어계획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6.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이 법에 따른 위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하천구역 진입시설, 보행로, 주차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기본계획의 평가 · 분석에 관한 사항

⑨ 지방하천을 관할하는 시 · 도는 이 법과 대통령령, 부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제7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계 기간에는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의 종료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다음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조(국가 등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민은 법률에서 제한하거나 긴급한 안전 확보 목적 등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④ <u>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신 설></u>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u> -----. <u>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u> <u>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사항</u> <u>3. 홍수방어시설과 홍수방어계획</u> <u>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u> <u>5.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u> <u>6.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p><u><신 설></u></p>	<p><u>7. 이 법에 따른 위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u>8. 하천구역 진입시설, 보행로, 주차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u>9. 하천기본계획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u></p>
<p>⑤ ~ ⑧ (생략)</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u>⑨ 지방하천을 관할하는 시·도는 이 법과 대통령령, 부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u></p>
<p>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생략)</p>	<p>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u>② 하천관리청은 하계 기간에는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p>